

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2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5. 17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하여 문화회관 및 을숙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 번 : 사하구 하단동 1149-11번지
- 지 목 : 잡종지
- 매입(예정)면적 : 26,976m²중 1,080m²
- 공시지가 : 85,100원/m²
- 매입예정금액(소요예산) : 110,000천원 (공시지가의 120%)
- 현 소유자 : 한국수자원공사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회계명 : 일반회계 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구 분		합 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비 고
	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
취	계	1	1,080	110,000	1	1,080	110,000				
	1.매입	1	1,080	110,000	1	1,080	110,000				
	2.교환 으로 취득										
득	3.기타 취득										
	계										
처	4.매각										
	5.양여										
	6.교환 으로 처분										
	계	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계										

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(7-2)

(단위 : m²,천원)

재산의 표시				추정 금액 (평가액)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고
구분	소재지	지목 (구조)	면적(평)					
계	1필지		1,080(약326평)	110,000	2002. 상반기	올속도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차량정체,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제공	한국수자원공사	
토지	하단동 1149-11번지	잡종지	1,080(약326평)	110,000				

